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00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구합62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3.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20,143,520원, 농어촌특별세 1,809,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139,046,570원, 지방교육세 1,308,400원, 농어촌특별세 8,504,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1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